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5
----------	-----

제안년월일 : 1995. 5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 안 이 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의원정수가 38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 도직제의 일부개편에 따른 위원회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 현행 지방자치법부칙에 의거 다음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이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7명내지 10명으로 함. (안 제2조)
-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중 가정복지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삼입하고 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월을 단축하여 1년 6월로 함. (안 부칙 제2항)

3. 참 고 사 항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
- 지방자치법부칙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 조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10인
2. 기획경제위원회 : 8인
3. 내무위원회 : 8인
4. 교육사회위원회 : 8인
5. 농림수산위원회 : 8인
6. 건설교통위원회 : 7인

제3조제1항중 “의안과 청원 심사등을 처리하는”을 “의안심사와 청원 및 진정서처리등의”로 하며, 동조 제2항제4호가목중 “가정복지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제6호중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하며 가목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나목 “건설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 참 고 사 항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 (제4,947호 '95. 4. 1)

제22조제1항중 “시·도의 지방의회(이하 “시·도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을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으로 하고, 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 (제4,949호 '95. 5. 10)

- 별첨:표 2 -

□ 지방자치법 부칙 ('94. 12. 20)

제3조(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 충청북도의회의위원회 조례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